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EOUL M! SOUL

2024년 서울시 보훈수당 사업안내

2024. 1.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목 차

1.	참전명예수당 지원	3
2.	보훈명예수당 지원	8
3.	보훈에우수당 지원	11
4.	생활보조수당 지원	16
5.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	21
6.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25
7.	예산 및 행정사항	31
8.	서식	

2024년 서울시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원계획

나라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수당 및 위문금을 지급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시장방침 제176호, '18. 9. 21.)
-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시장방침 제156호, '19. 7. 19.)

□ 추진연혁

- 2010. 7. 참전명예수당 지급(참전유공자)
- 2013. 4. 보훈명예수당 지급(애국지사)
- 2017. 10. 생활보조수당 지급(저소득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4·19, 5·18, 특수임무 유공자)
- 2020. 3.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

2024년 주요 변경사항

1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인상
- ('23년) 월 10만원 → ('24년) 월 15만원

2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 확대

- 비참전 상이유공자(전상·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약 2,800명 추가 지원
- ('23년)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500명)
- ('24년) 기존 지원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3,300명)

□ 지원개요

○ 지원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중 선별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14만 명 중 서울시 보훈수당 및 위문금 대상자는 11만 명

※ 제외자 : 순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국가수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제대군인

《 서울시 보훈대상자 현황 》

(2023. 12월말 기준 / 단위 : 명, 출처: 국가보훈부)

구분	총계	독립 유공자	재일학도 의용군	전몰순직 군경유족	상이군경 (전상공상)	무공 수훈자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자	4·19 유공자	공상 공무원	특수임무 유공자	5·18 유공자
총계	110,192	1,972	51	8,459	33,417	17,281	40,053	7,147	343	332	566	571
본인	68,071	2	1	0	16,646	2,864	40,053	7,147	161	332	389	476
유족	42,121	1,970	50	8,459	16,771	14,417	0	0	182	0	177	95

① 보훈수당: 월 48,902명, 90,926백만원, 매월 25일 지급

○ 지원대상 : ①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제외)

②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③ 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중 선별지원하고 있어 미지원자 존재, 동일대상에게 이중 지급 금지

구 분	참전명예	보훈명예*	보훈예우	생활보조	독립유공생활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생존 애국지사	4.19, 5.18, ·특수임무,비참전 상이유공자	저소득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저소득 독립 유공자(손)자녀
예산액	67,500백만원	26백만원	3,960백만원	9,840백만원	9,600백만원
월인원	37,500명	2명	3,300명	4,100명	4,000명
월지급액	15만원	10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지급주체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보훈명예수당 : 애국지사 사망조의금 2백만원 포함

② 위문금: 연 32,220명 및 유관단체·기관(226개소), 2,493백만원, 기념일 도래월 지급

구 분	3.1절	4.19 기념일	5.18 기념일	6월 호국보훈의달	8.15 광복절
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4.19 유공자 본인 및 유족	5.18 유공자 본인 및 유족	6.25 참전용사 등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예산액	750백만원	35백만원	55백만원	903백만원	750백만원
연인원	7,500명	350명	550명	16,320명 226개소	7,500명
지급주체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1

참전명예수당 지원

□ 추진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 사업연혁

- '09.04.02.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09.07.06. : 조례 공포(제4805호)
- '10.03.04. :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안훈식 의원 외 10)
 - ※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무공수훈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10.04.01. : 제221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원안가결)
- '10.04.22.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4974호)
- '10.07월~ : 참전명예수당 지급
- '12.03.15.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5267호)
 - ※ 지급 거주요건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 '13.03.28.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5452호)
 - ※ 참전명예수당 인상[3만원 ⇒ 4만원('13.4월) ⇒ 5만원('14.1월)]
- '18.10.04.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6929호)
 - ※ 참전명예수당 인상[5만원('14.1월) ⇒ 10만원('19.1월)]
- '19.03.28.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7054호)
 - ※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지 단서 조항 삭제 ⇒ 市, 자치구 참전명예수당 중복지원 가능
- '20.07.16.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7626호)
 - ※ 지급 거주요건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21.12.30.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8253호)
 - ※ 제외자(보훈급여금 및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대상자) 규정 삭제, '22.1월 시행
- '23.10.04.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8908호)
 - ※ 참전명예수당 인상[10만원 ⇒ 15만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37,500명)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조례 제3조),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급 가능**

① 자격기준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등록기산일 기준은 13페이지 참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 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주민등록상 생년월일 '24.1월 현재 '59년 1월 이전 출생자)

③ 거주기준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

○ 지급액 : 1인당 월 15만원(조례개정으로 수당 인상: 10만원→15만원, '24.1월~)

○ 지급시기 : 매월 25일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입금자명 : 서울참전명예

○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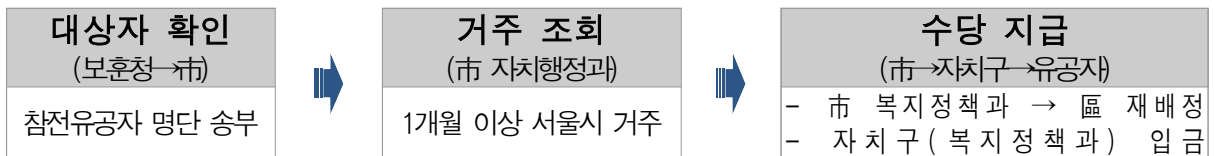
- 단,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서식1-4)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 현금수령증 교부(서식1-5)
-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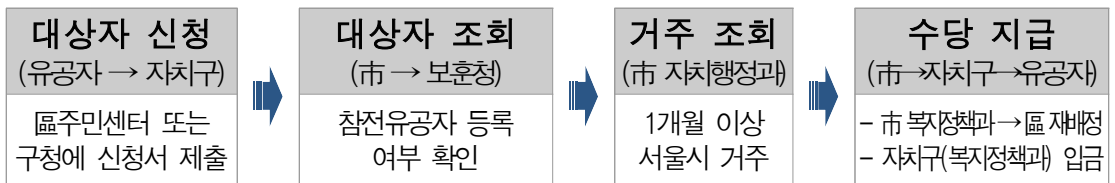
1.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민원담당에게 확인가능)
 - 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다.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 가.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아 거동불가여부를 확인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 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입원통지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아 확인

○ 지급절차 : 직권 또는 신청 지급

◎ 직권지급



※ 신청지급 (명단추출시기에 따른 보훈청명단 누락자 보완)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지급신청서 제출(서식1-1,2)
- ※ 본인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제출(신청서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자체보관)
- 신청자는 자격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
- 미등록자는 보훈청에 등록신청필요 : **등록 등 기준적합시점부터**

소급가능하며 당해연도분에 한하여 지원(원칙) ※ 등록 신일 기준은 13페이지 참고

□ 지급 시 유의사항

○ 참전유공자 자격은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일부터 인정

- 단, 아래의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요건(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후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경우, 기등록일을 등록기산일로 간주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 참전명예수당 소급은 대상적합시점부터 가능하며 당해연도분에 한함(원칙)
('22.1월부터 직권지급으로 '22.1월 이후 직권신청 대상자는 최대 '22.1월까지 소급가능)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및 결정)

-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 참전유공자 사망 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전·출입 시(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일자 기준)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서울시 자치구 간 전출자 : 해당 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지급
※ 명단 통보 이후에 발생한 구간 전출 사항은 미반영
- 타시도 전입자, 주민등록 재·신규등록자 : 서울시 거주요건 1개월 충족한 달부터 지급 ※ 2월 전입 후 신청한 사람은 3월부터 지급

○ 자격 변동자 : 보훈청 등록 처리일(등록일 아님)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자 : 사망, 법 제38조제2항(예우의정지) 또는 제39조제1항(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해당하는 경우 등

○ 환수

-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환수를 하여야 하며,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①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지급한 경우 포함

□ 소요예산 : 67,500백만원(시비 100%)

- 산출근거 : 37,500명 × 150,000원 × 12월 = 67,500백만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부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 보훈대상자 등 지원(세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2)

□ 행정사항

○ 동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 및 안내

-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자체보관

○ 자치구(보훈담당부서)

- 홍보 : 자치구 소식지 및 동주민센터 전광판 활용하여 적극 홍보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중복,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관리 및 지급일(매월 25일) 준수 철저
- 신규신청자 및 지급결과는 매월 말일까지 市 복지정책과 제출

2

보훈명예수당 지원

□ 추진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

□ 사업연혁

- '13.04.01.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제5453호)
 - ※ 보훈명예수당[10만원/월] 및 사망 조의금[100만원/1회] 신설
 - ※ 지급대상
 - ▶ 보훈명예수당 : 생존애국지사 / 사망 조의금 : 유족
- '13.04월~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조의금 지급
- '19.03.28.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7055호)
 - ※ 보훈명예수당 인상[10만원 ⇒ 20만원('19.3월)]
- '21.12.30.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82555호)
 - ※ 보훈명예수당 인상[20만원 ⇒ 100만원('22.1월)], '22.1월 시행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애국지사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존애국지사(조례 제3조),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급 가능**
- ① 자격기준 :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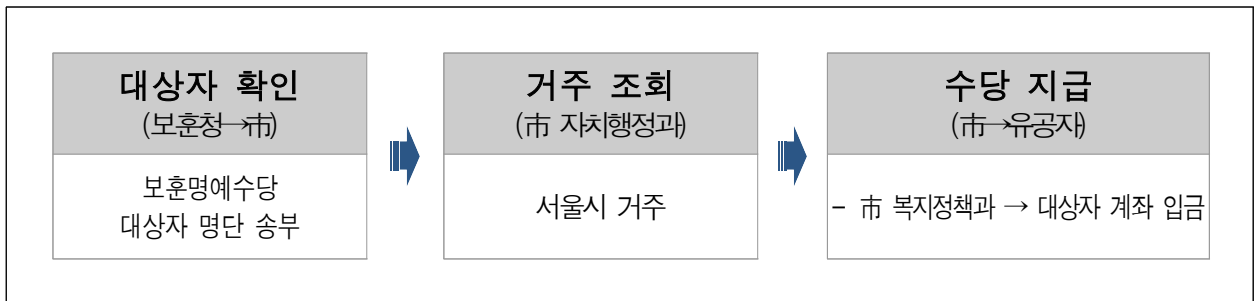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② 거주기준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지급액 : 1인당 월 100만원, 사망시 사망조의금 1회 10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입금자명 : 서울보훈명예
-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 원칙
- 지급절차 : 직권 지급



□ 지급 시 유의사항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전·출입 시(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일자 기준)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자격 변동자 : 보훈청 등록 처리일(등록일 아님)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보훈청 등록취소자 : 사망, 독립유공자법 제38조(보상의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

○ 환수

-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환수를 하여야 하며,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①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지급한 경우 포함

□ **소요예산** : 26백만원(시비 100%)

- 산출근거 : 2명 × 1,000,000원 × 12월 = 24백만원

2명 × 1,000,000원 × 1회 = 2백만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부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 보훈대상자 등 지원(세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2)

3

보훈예우수당 지원

□ 추진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책무)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보훈예우수당)

□ 사업연혁

- '17.01.05.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제6389호)
 - ※ 보훈예우수당[5만원] 신설
 - ※ 지급대상 :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3개월 이상 민주화(4·19, 5·18)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중 보훈처 상이 7급 보상금 미만 수령자
- '17.01월~ : 보훈예우수당 지급
- '19.01.01.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6942호)
 - ※ 보훈예우수당 인상[5만원 ⇒ 10만원('19.1월)]
- '20.07.16.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7625호)
 - ※ 지급 거주요건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22.01.01.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8254호)
 - ※ 제외자(보훈처 상이 7급 보상금 미만 수령자) 규정 삭제, '22.1월 시행
- '23.05.22.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8723호)
 - ※ 지급대상 확대(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 '24.1월 시행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민주화유공자(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3,300명)
 -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유공자(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조례 제7조),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급 가능**

① 자격기준 : 민주화유공자(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 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5·18유공자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②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주민등록상 생년월일 '24.1월 현재 '59년 1월 이전 출생자)

③ 거주기준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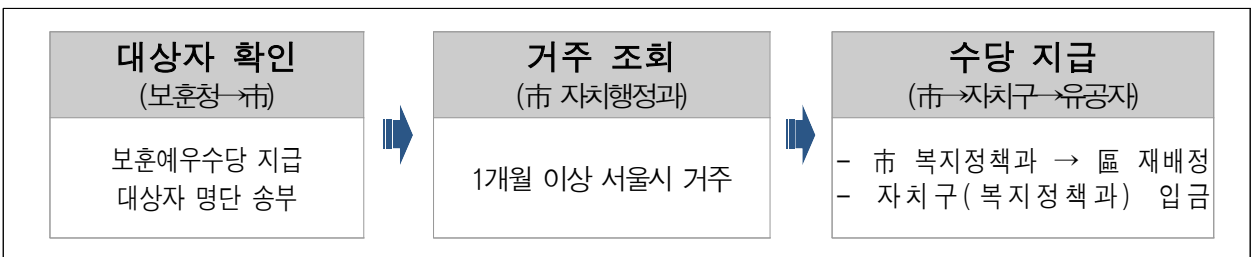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

- 지급액 : 1인당 월 1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입금자명 : 서울보훈예우
 -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 원칙
 - 단,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서식3-2)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 현금수령증 교부(서식3-3)
-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1.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민원담당에게 확인가능)
 - 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다.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 가.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아 거동불가여부를 확인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 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입원통지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아 확인

○ 지급절차 : 직권 지급



□ 지급 시 유의사항

-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전·출입 시(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일자 기준)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서울시 자치구 간 전출자 : 해당 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지급
※ 명단 통보 이후에 발생한 구간 전출 사항은 미반영
- 타시도 전입자, 주민등록 재·신규등록자 : 서울시 거주요건 1개월 충족한 달부터 지급 ※ 2월 전입 후 신청한 사람은 3월부터 지급

○ **자격 변동자 : 보훈청 등록 처리일(등록일 아님)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보훈청 등록취소자 : 사망, 국가유공자법 제78조(보상의정지) 또는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5·18유공자법 제94조(예우의정지),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9조(예우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

○ **환수**

-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환수를 하여야 하며,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①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②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지급한 경우 포함

□ **소요예산 : 3,960백만원(시비 100%)**

- 산출근거 : 3,300명 × 100,000원 × 12월 = 3,960백만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부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 보훈대상자 등 지원(세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2)

□ **행정사항**

- **동주민센터 : 사업 안내**
- **자치구(보훈담당부서)**
 - 홍보 : 자치구 소식지 및 동주민센터 전광판 활용하여 적극 홍보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중복,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관리 및 지급일(매월 25일) 준수 철저
 - 지급결과는 매월 말일까지 市 복지정책과 제출

4

생활보조수당 지원

□ 추진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예우 및 지원)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2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시장방침 제176호, ' 18.9.21.)

□ 사업연혁

- '17.01.05.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
※ 생활보조수당(10만원) 및 보훈예우수당(5만원) 지급('17.10월 시행)
- '19.09.26.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7310호)
※ 생활보조수당 대상자 확대('20.3월 시행, 본인 →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20.07.16.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7625호)
※ 지급 거주요건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22.12.30.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8556호)
※ 생활보조수당 인상('23.1월 시행, 월 10만원 → 월20만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중 만 65세 이상이고,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조례 제7조),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급 가능
 - ※ 소득조사 대상 및 부양가족 기준은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기준에 의함
- ① 자격기준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 | | |
|------------------------|---------------------|------------------------|
| ○ 순국선열 유족 | ○ 애국지사 및 유족 | ○ 전몰·순직군경 유족 |
| ○ 전(공)상군경 및 유족 | ○ 무공수훈자 및 유족 |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
|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4.19혁명공로·사망자 및 유족 |
| ○ 5·18민주화 공로사망행방불명자 유족 | ○ 특수임무 공로사망행방불명자 유족 | |

- ②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24.1월 현재 ' 59년 1월 이전 출생자)
- ③ 거주기준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저소득층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근로,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 조사결과 적합일 경우 신청일부턴 소급하여 지원

*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1)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자
 - 생활보조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접수(서식4-2,3)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분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으로 기재
-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등록자
 - 생활보조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접수(서식4-2,3)
 - ▷ 신청접수시 차상위계층 확인 조회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됨을 사전 안내
 - 차상위계층 확인절차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접수(서식4-4)
 -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신청 및 결과 통보절차 활용

- 지급액 : 1인당 월 2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입금자명 : 서울생활보조
-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
 - 단,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서식4-5)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 현금수령증 교부(서식4-6)
 -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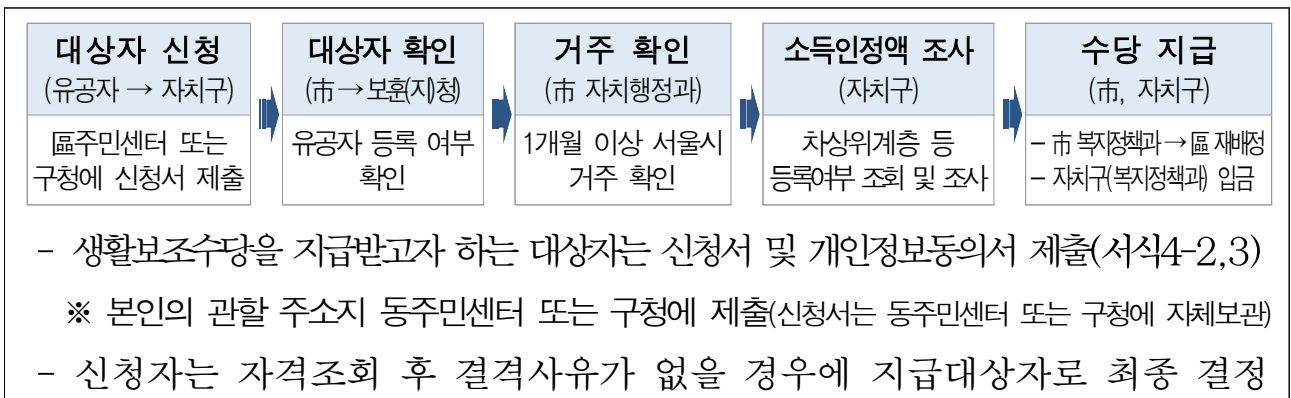
***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1.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민원담당에게 확인가능)
 - 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다.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 가.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아 거동불가여부를 확인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 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입원통지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아 확인

○ 중복수당 공제

-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생활보조수당에서 각 수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 ※ 지급수당 선택에 대한 본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생활보조수당 우선 지급**

○ 지급절차 : 신청 지급



□ 지급 시 유의사항

- 대상자 사망 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자격요건(1개월 거주 등) 충족 후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자치구간 전출입자 : **명단 통보일 기준 해당 자치구에서** 지급
 - 기존 지급 자치구는 계좌번호 등 지급정보를 당월 해당 자치구로 통보

- 국가유공자 자격 변동자 : 보훈부 등록 처리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국가유공자 자격변동 및 자격상실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소득인정액 변경
 - 기존 지급자가 지급 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초과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소득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666, ' 17.4.5.)
- 생활보조수당 신청 후 소득조사기간(약 1~2개월) 명단 관리 철저
 - 소득조사 후 자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접수한 달부터 소급 지급
- 환수 ※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지급한 경우 포함
 -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환수를 하여야 하며,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①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②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 **소요예산** : 9,840백만원(시비 100%)

- 산출근거 : 4,100명 × 200,000원 × 12월 = 9,840백만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부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 보훈대상자 등 지원(세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2)

□ **행정사항**

- 동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 및 안내 ▶접수시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여부 확인 필수
- 자치구(통합조사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행복e음 활용)
- 자치구(보훈담당부서)
 - 홍보 : 자치구 소식지 및 동주민센터 전광판 활용하여 적극 홍보
 - 관리 : 중복·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 관리 및 지급일(25일) 준수 대상자 선정 후 소득재산기준 충족여부 매월 확인 후 지급
 - 신규신청자 및 지급결과는 매월 말까지 市 복지정책과 제출

참 고

기준중위소득 및 생활조정수당(국가보훈부) 기준

□ 기준중위소득 및 차상위계층 등 지급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 23.8.16.)

('24년도 기준, 단위:원, 월)

구 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국가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국가보훈부 고시 제2023-7호, ' 23.10.17.)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382,2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지급대상	기준금액의 50%	1,191,000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기준금액의 40%	952,800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기준금액의 32%	762,240	1,178,436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 기준소득 50% 이하 : 242,000원 - 기준소득 40% 이하 : 277,000원 - 기준소득 30% 이하 : 311,000원			- 기준소득 50% 이하 : 300,000원 - 기준소득 40% 이하 : 336,000원 - 기준소득 30% 이하 : 370,000원				

※ 8인 이상 가구 기준금액 :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 증가(8인 가구 : 기준금액 100%는 9,411,619원, 50%는 4,705,810원)

5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

□ 추진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시장방침 제156호, '19.7.19.)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지원사업)
 -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신설('20.3월 시행)

□ 사업연혁

- '19.12.31.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
 -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20만원) 신설('20.3월 시행)
 - ※ 지급대상: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 '22.02.21. : 2022년 서울시 보훈수당 지원계획 수립
 -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단위 개선: 가구 → 개인
- '22.12.30.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8555호)
 -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 확대('23.1월 시행,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 소득 70%이하인 자 →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자격기준 :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지급목적 :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하여 영예로운 생활보장
- 지급대상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등록된 자녀 및 손자녀 중
 - ① 동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 ② 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보훈부 생활조정수당(중위소득50%이하) 수급자 : 월478천원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345천원

② 거주기준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③ 소득재산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

※ 「생활지원금」의 경우 생활수준 조사기간이 있어 해당될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월부터 소급지원

※ '23.1월부터 직권지급으로 '23.1월 이후 직권 대상자는 최대 '23.1월까지 소급가능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금액 70% (원)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5,960,496

❖ 2024년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2,130,000원	3,408,000원

❖ 2024년 국가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원)	2,382,2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금액 50% (원)	1,191,000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지급액 : 1인당 월 2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입금자명 : 서울독립유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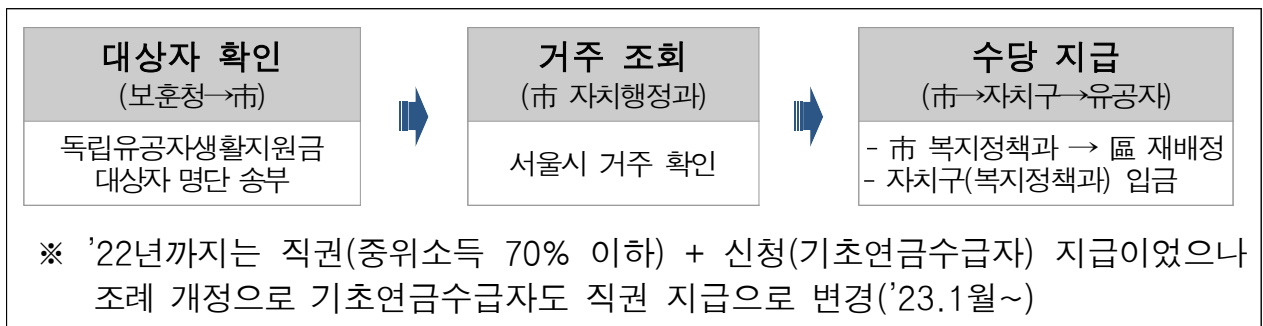
○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 원칙

- 단,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서식5-2)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 현금수령증 교부(서식5-4)
-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1.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민원담당에게 확인가능)
 - 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다.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 가.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아 거동불가여부를 확인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 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입원통지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아 확인

○ 지급절차 : 직권 지급



□ 지급 시 유의사항

- 국가보훈부 신규 생활지원금 대상자 : 국가보훈부 등록일부터 지급
 - 등록일 기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보훈부 신규 등록 당시 타시도 거주시 서울시 전입일 기준으로 지급
- 대상자 사망 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사망 후 지급이 확인된 경우 사망 익월부터 전액 환수

○ 전·출입 시(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일자 기준)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서울시 자치구 간 전출자 : 해당 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지급
※ 명단 통보 이후에 발생한 구간 전출 사항은 익월부터 반영

○ 독립유공자 자격 변동자 : 국가보훈부 등록 처리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자가 보상금 수령 대상이 되는 경우
- 소득 변동 등으로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국가보훈부의 '가계지원비'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국가보훈부 가계지원비>

-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을 광복 이전·이후로 구분하여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손자녀)에게 매월 40만원 지급 **※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환수

-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환수를 하여야 하며,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①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②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지급한 경우 포함

□ **소요예산 : 9,600백만원(시비 100%)**

- 산출근거 : 4,000명 × 200,000원 × 12월 = 9,600백만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부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 보훈대상자 등 지원(세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2)

□ **행정사항**

- 동주민센터 : 사업 안내
- 자치구(통합조사팀) : 소득재산조사 (행복e음 활용)
- 자치구(보훈담당부서)
 - 홍보 : 자치구 소식지 및 동주민센터 전광판 활용하여 적극 홍보
 - 관리 : 중복·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 관리 및 지급일(25일) 준수
 - 지급결과는 매월 말까지 市 복지정책과 제출

6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추진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시장방침 제176호, '18.09.21)

□ 사업연혁

- '13.3.11.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13.8.~)
- '18.7~9월 : 위문금 지원 확대 관련, 유족 및 보훈단체(광복회)의 지속 건의
※ '18. 7. 20, 서울시장 - 서울시 보훈단체 대표 오찬간담회 개최
- '18.9.21. : 건의사항 수렴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수립
- '19.1.28. : 조례 개정안 발의 (의원 발의, 위문금 지급대상 확대)
- '19.3.28. : 일부조례개정 공포(제7055호)
※ 지급대상 확대 : 본인 및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의 4촌이내 형제·자매
- '23.12.29.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 공포(제9080호)
※ 4.19, 5.18, 호국보훈의달 기념일 위문금 명시

□ 지원개요

① 국가기념일 위문금

- 지급시기 : 연 4회(3·1절, 4·19, 5·18, 8·15광복절)
- 지급대상 : 관련 유공자 및 유족 15,900명

○ 지급기준

구 분	인 원(명)	지급내용(천원)	예 산(천원)
계	15,900		1,590,000
3·1절 위문(독립유공자)	7,500	개인별 100	750,000
4·19 위문(4.19혁명유공자)	350		35,000
5·18 위문(5.18민주화운동유공자)	550		55,000
8·15광복절 위문(독립유공자)	7,500		750,000

○ 소요예산 : 1,590백만원

○ 거주요건 : 기념일 해당 월에 市 거주

○ 지급절차

- 독립유공자 : 직권주의(본인,선순위유족)+신청주의(선순위유족의 4촌이내 형제자매)
- 기타유공자 : 직권주의(본인,선순위유족)

❖ 직권지급: 국가보훈부 유족 등록자

○ 보훈부에 등록된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직권지급

○ 지급절차



❖ 신청지급: 국가보훈부 유족 미등록자

○ 보훈부에 미등록된 선순위 유족의 4촌이내 형제·자매(동순위 유족)

○ 지급절차(신청)



○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 원칙

- 단,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서식6-4)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현금수령증 교부(서식6-5)
-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급대상 확인

① 국가보훈부에 유족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격확인 가능

* 공동이용정보명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국가유공자-수권자-신청인 관계 확인)

② 미등록자 :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신청인 관계가 확인 되는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격확인

* 공동이용정보명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수권자) 관계 확인)

※ 독립유공자 정보 :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독립유공자정보’에서 검색

㉡ 선순위 유족과 신청인(동순위유족)의 관계 확인 : 제적등본 등(4촌이내 형제·자매)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독립유공자법 제5조)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4.19혁명유공자 유족의 범위(국가유공자법 제5조)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5.18민주유공자 유족의 범위(5·18유공자법 제5조)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신청서 접수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 필수

- 자치구(보훈담당부서, 수당지급 총괄)

· 수당 지급 및 사업 홍보

▶ 지급 일 : 각 기념일 도래일 전 지급

▶ 입금자명 : “서울삼일위문”, “서울사일구위문”, “서울오일팔위문”, “서울광복위문”

· 중복·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 관리 철저 및 지급결과 제출

※ 대상자 미신청으로 인한 누락자 발생 시, 당해연도 위문금만 소급 지급 인정

②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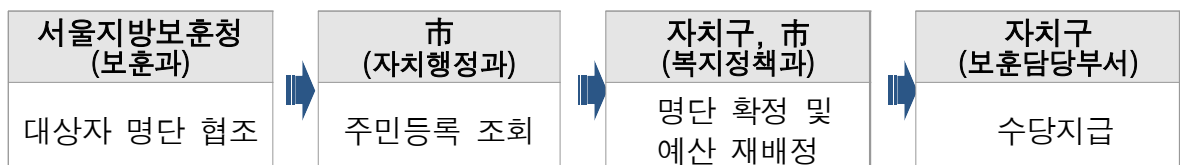
- 지급시기 : 6월(호국보훈의 달)
- 지급대상 : 관련 유공자·유족 16,320명 및 유관단체·기관 226개소
- 지급기준

구 분		인 원(명)/개소	지급내용(천원)	예 산(천원)
계		16,546		902,500
개 인 위 문 별 금	소 계	16,320		832,000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중상이자	320	개인별 100	32,000
	상이자 및 미망인	16,000	개인별 50	800,000
기 관 위 문 관 금	소 계	226		70,500
	중앙보훈병원	1개소	3,000	3,000
	보훈단체 구 지회	225개 지회	지회별 300	67,500

- 소요예산 : 903백만원
- 거주요건 : 기념일 해당 월에 市 거주
- 지급절차 : 직권주의(상이자 본인 및 미망인,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 직권지급: 국가보훈부 등록자

- 보훈부에 등록된 본인 및 유족 : 직권지급
- 지급절차



○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 원칙

- 단,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서식6-4)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현금수령증 교부(서식6-5)
-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1.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민원담당에게 확인가능)
 - 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다.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 가.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아 거동불가여부를 확인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 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입원통지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아 확인

○ 행정사항

- 자치구(보훈담당부서, 수당지급 총괄)

· 수당 지급 및 사업 홍보

▶ 지 급 일 : 각 기념일 도래일 전 지급

▶ 입금자명 : “서울호국보훈”

· 중복·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 관리 철저 및 지급결과 제출

※ 누락자 발생 시, 당해연도 위문금만 소급 지급 인정

7 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93,419백만원(사비 100%)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부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 보훈대상자 등 지원(세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2)

(단위: 천원)

통계목(사업내용)	2023	2024	증감액	증감사유
보훈대상자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수당, 위문금)	71,506,500	93,418,500	21,912,000	
참전명예수당	48,000,000	67,500,000	19,500,000	지급액 인상 : 10만원 → 15만원
생활보조수당	11,040,000	9,840,000	△ 1,200,000	지급인원 감소
보훈예우수당	960,000	3,960,000	3,000,000	대상자 확대 : 비참전상이유공자 포함
보훈명예수당(사망조의금 포함)	52,000	26,000	△ 26,000	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지급인원 감소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8,904,000	9,600,000	696,000	지급인원 증가
보훈대상자 기념일 위문금 지급	2,550,500	2,492,500	△ 58,000	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지급인원 감소

□ 행정사항 :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급(연중)

- 보훈수당 :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각 기념일 도래월 지급

참 고

한눈에 보는 서울시 보훈수당

(‘24년 1월 기준)

구 분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생 존 애국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 이하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근거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시월	2010년 7월	2013년 4월	2017년10월	2017년 10월	2020년 3월
대상 인원	37,500명	2명	3,300명	4,100명	4,000명
지원 금액	월 15만원	월 100만원	월 10만원	월 20만원	월 20만원
’24년 예산액	67,500백만원	26백만원 (사망초의금 2백만원 포함)	3,960백만원	9,840백만원	9,600백만원
연령 기준	만 65세이상	-	만 65세이상	만 65세이상	-
주민등록 기준	1개월	-	1개월	1개월	-
기타 기준	-	-	-	-	*아래요건 모두 충족 ①국가보훈부 독립유공 생활지원금 수급자 ②기준중위소득70%이하인 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수당액 연 혁	3만원(’10.7월)→ 4만원(’13.4월)→ 5만원(’14.1월)→ 10만원(’19.1월)→ 15만원(’24.1월)	10만원(’13.4월)→ 20만원(’19.4월)→ 100만원(’22.1월)	5만원(’17.10월)→ 10만원(’19.1월)	10만원(’17.10월)→ 20만원(’23.1월)	-
비 고	*대상자 확대(’22.1월) -제외자(상이군경, 고엽제후유 의증자) 규정 폐지 -전년 대비 월 12,743명 증가 *지급액 인상(’24.1월) - 10만원→15만원 - 전년 대비 월 1,850백만원 증가	-	*대상자 확대(’24.1월)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포함 -전년 대비 월 2,800명 증가	*지급액 인상(’23.1월) - 10만원→20만원 - 전년 대비 월 460백만원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 (복지부 협의 완료)	*대상자 확대(’23.1월) -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 전년 대비 월 810명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 (복지부 협의 완료)

*국가유공자 ①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5.18민주화운동사망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②본인: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서울시 보훈수당 간 중복지급 불가

참 고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별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원 현황

대 상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65세 이상)	생활보조수당 (저소득, 65세 이상)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저소득 손(자녀))	위문금	비 고	
국 가 유 공 자	독립유공자	본인	×	월 100만원	×	월 20만원	×	연 20만원(3.1절, 광복절)	·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 상하수도요금 감면 · 후손 장학금
		유족	×	×	×	월 20만원	월 20만원	연 20만원(3.1절, 광복절)	
	전몰 / 순직 군	유족	×	×	×	월 20만원	×	연 5~10만원(호국보훈의달)	
	참전유공자 (625, 월남전)	본인	월 15만원	×	×	월 20만원	×	×	
		유족	×	×	×	×	×	×	
	상 이 군 경 (전상공상군경)	본인	월 15만원	×	월 10만원	월 20만원	×	연 5~10만원(호국보훈의달)	중상이자 10만원 / 상이자 5만원
		유족	×	×	×	월 20만원	×	연 5~10만원(호국보훈의달)	
	무공수훈자	본인	×	×	×	월 20만원	×	×	
		유족	×	×	×	월 20만원	×	×	
	보국수훈자	본인	×	×	×	×	×	×	
		유족	×	×	×	×	×	×	
	4 . 1 9 유 공 자	본인	×	×	월 10만원	월 20만원	×	연 10만원(4.19 기념일)	
		유족	×	×	×	월 20만원	×	연 10만원(4.19 기념일)	
	순공무직원	유족	×	×	×	×	×	×	
	공공무상원	본인	×	×	월 10만원	×	×	×	
		유족	×	×	×	×	×	×	
	625참전 재일 학도의용군인	본인	×	×	×	월 20만원	×	×	
		유족	×	×	×	월 20만원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	×	×	×	×	×		
	유족	×	×	×	×	×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	월 10만원	월 20만원	×	×		
	유족	×	×	×	월 20만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월 15만원	×	×	월 20만원	×	×		
	유족	×	×	×	×	×	×		
5 . 1 8 민 주 화 유 공 자	본인	×	×	월 10만원	월 20만원	×	연 10만원(5.18 기념일)		
	유족	×	×	×	월 20만원	×	연 10만원(5.18 기념일)		
보 훈 보 상 대 상 자	본인	×	×	×	×	×	×		
	유족	×	×	×	×	×	×		
제 대 군 인 (중장기 복무)	본인	×	×	×	×	×	×		
	유족	×	×	×	×	×	×		

※ 서울시 보훈수당(5종) 간 중복 지급 불가

[서식1-1]	참전명예수당 지급(수당포기.수당회복)신청서	1
[서식1-2]	참전명예수당 개인정보이용동의서	3
[서식1-3]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	4
[서식1-4]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5
[서식1-5]	참전명예수당 현금수령증	6
[서식1-6]	참전명예수당 현금수령자 지급대장	7
[서식2-1]	애국지사 사망조의금 신청서	8
[서식3-1]	보훈예우수당 계좌변경 신청서	9
[서식3-2]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10
[서식3-3]	보훈예우수당 현금수령증	11
[서식3-4]	보훈예우수당 현금수령자 지급대장	12
[서식4-1]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안내(안)	13
[서식4-2]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	14
[서식4-3]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5
[서식4-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6
[서식4-5]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계좌 변경신청서	20
[서식4-6]	생활보조수당 현금수령증	21
[서식4-7]	생활보조수당 현금수령자 지급대장	22
[서식5-1]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계좌변경 신청서	23
[서식5-2]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24
[서식5-3]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 안내문(안)	25
[서식5-4]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현금수령증	26
[서식5-5]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현금수령자 지급대장	27
[서식6-1]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지급 안내문(안) (게시용)	28
[서식6-2]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지급 안내문(안) (발송용)	29
[서식6-3]	독립유공자(유족) 기념일 위문금 지급신청서	30
[서식6-4]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31
[서식6-5]	「독립유공자(유족) 기념일 위문금」 현금 수령증	32
[서식6-6]	「독립유공자(유족) 기념일 위문금」현금 수령자 지급대장	33

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수령포기 · 수령회복)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우편번호 :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전화번호)									
예금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수령포기 및 수령회복 사유 - 반드시 자필기재 할 것》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포기 · 수령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OO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령회복의 경우)										수수료	
										없 음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지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월간)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확정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법정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보관용〉		참전명예수당 현금수령증			
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용	급여명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령일자	년 월 일	수령액		원
<p>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수령(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 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수령자 : (서명 또는 인)</p>					

..... 절 취 선

〈교부용〉		참전명예수당 현금수령증			
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내용	급여명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령일자	년 월 일	수령액		원
<p>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수령(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 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수령자 : (서명 또는 인)</p>					

참전명예수당 현금수령자 지급대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공자 구분	수령액	수령일

애국지사 사망조의금 신청서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애국지사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애국지사 사망조의금을 신청합니다.

등록번호										
보훈예우수당 계좌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 기관명	당 초				예금종류	당 초			
		변 경					변 경			
	계좌번호	당 초				예금주 성명				
		변 경								
<p>「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계좌변경 지급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 OO 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지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월간)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확정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법정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해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보관용〉	보훈예우수당 현금수령증			
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용	급여명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령일자	년 월 일	수령액	원
<p>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수령(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 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수령자 : (서명 또는 인)</p>				

..... 절 취 선

〈교부용〉	보훈예우수당 현금수령증			
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내용	급여명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령일자	년 월 일	수령액	원
<p>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수령(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 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수령자 : (서명 또는 인)</p>				

보훈예우수당 현금수령자 지급대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공자 구분	수령액	수령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안내(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자)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다소나마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유족증, 통장사본 등) 제출 후 차상위 계층 등록여부 등을 조회하여 지급대상자가 되시면 매월 2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시청·구청·동주민센터)에 방문 혹은 연락하시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지급대상유형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등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1. 최근 서울시 전입일 기재 (년 월 일)	수수료	
	2.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해당 () / 비해당 ()	없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등 관련 통신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p><input type="checkbox"/> 생활보조수당 사업의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p> <p style="margin-left: 20px;">○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p> <p style="margin-left: 20px;">○ 선택항목 : 연락처(사무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p> <p style="margin-left: 20px;">○ 생활보조수당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기간</p> <p style="margin-left: 20px;">○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p> <p style="margin-left: 20px;">생활보조수당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생활보조수당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p><input type="checkbox"/> 생활보조수당 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 등)</p>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민감정보)	
<p><input type="checkbox"/> 생활보조수당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여부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 등)</p>	
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서식4-4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휴대전화 ²⁾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시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1. 배우자 관계 ³⁾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⁴⁾ :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⁵⁾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⁶⁾ : _____, _____					
부양의무자 ⁷⁾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작성방법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3), 4) 해당자에 한함
- 5), 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8) 동일보장가구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자가 []임차 ⁹⁾ []기타 ¹⁰⁾) []교육급여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이름 : _____)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_____),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아동수당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아동 · 청소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신청 []미신청] [인터넷통신사 []KT []SK브로드밴드 []LG U+ []SK 텔레콤 []기타(_____)]]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_____, 주민번호 : _____]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노인	[]기초연금([]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장애인연금([]배우자 동시신청 []차상위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시설이용·입소 []자산형성 []타법 의료급여 ¹¹⁾ (_____)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전기요금	[] TV수신료 면제 [] 휴대전화요금 [] 지역난방요금 [] 도시가스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센터 : _____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_____ 이동통신사 []KT []SK 텔레콤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_____ 사업자명 : _____ 고객센터 : _____)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 _____ 전화번호 : _____ 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가족 사항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센터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복지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8.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민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 사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복지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복지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복지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복지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²⁾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9) 민간·공공임차, 사용자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안 내 사 항

처리 기한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계 법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 연금, 초·중·고 학 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 모가족, 기타(타법의 료급여 ¹³⁾ , 개발제한 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 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 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 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어 권 사본1부(외국어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 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청소 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자산형성)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 능	

1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서식4-6

〈보관용〉		생활보조수당 현금수령증			
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용	급여명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수령일자	년 월 일	수령액	원	
<p>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수령(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 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수령자 : (서명 또는 인)</p>					

..... 절 취 선

〈교부용〉		생활보조수당 현금수령증			
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내용	급여명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수령일자	년 월 일	수령액	원	
<p>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수령(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 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수령자 : (서명 또는 인)</p>					

서식4-7

생활보조수당 현금수령자 지급대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공자 구분	수령액	수령일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지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월간)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법정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되는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에 대해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없음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 안내문(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저소득층 독립유공자 후손(자녀 및 손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후손 중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및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귀하는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의 지급 대상자로 매월 20만원이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지급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지급 계좌와 다른 계좌로 「서울시 독립유공생활 지원수당」의 지급을 희망하시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구

담당자 복지정책과 ○○○

연락처 02-○○○-○○○○

〈교부용〉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현금수령증			
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용	급여명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수령일자	년 월 일	수령액		원
<p>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수령(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 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수령자 : (서명 또는 인)</p>					

..... 절 취 선

〈보관용〉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현금수령증			
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내용	급여명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수령일자	년 월 일	수령액		원
<p>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수령(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 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수령자 : (서명 또는 인)</p>					

서식5-5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현금수령자 지급대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공자 구분	수령액	수령일

《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지급 안내(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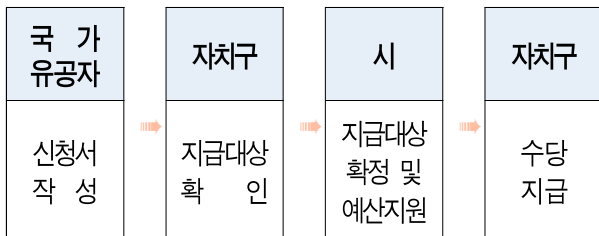
서울시에서는 '19년 광복절부터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연2회)을 기존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자 1인에서 선순위자(직계비속)의 동순위유족까지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3.1절, 광복절 기념일(연2회)
- 지급액 : 각 10만원
- 지급대상 :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선순위 유족의 동순위유족(4촌이내 형제·자매)
- 거주요건 : 기념일 해당 월에 市 거주

■ 위문금 지급

- 지급일 : 각 기념일 도래 3일 전까지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입금자명 : '서울삼일위문', '서울광복위문'
- 채무불이행 등으로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 신청가능
 - ※ 단, 본인이 채무불이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급 절차
 - ① 국가보훈처 유족 등록자(선순위자 등)
 - ⇨ 별도 신청없이 자치구에서 지급(시 예산지원)
 - ② 국가보훈처 유족 미등록자



■ 지급대상 확인

- 기존 지급대상인 선순위자유족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 국가보훈처에 미등록된 유족 분들은 신청에 의해 자격확인 후 지급됩니다.
 - 등록여부를 알 수 없는 유족께서는 시·구·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구청(보훈담당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자의 관계, 선순위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유족) 기념일 위문금」 지급 신청서
 -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문 의 : ○○구·동주민센터(보훈담당)
☎ ○○○-○○○○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지급 안내(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공헌하신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3.1절 및 광복절 기념일에 위문금(각 10만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19년 광복절부터 기념일 위문금을 기존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자 1인」에서 「선순위자(직계비속)의 동순위유족」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은 별도 신청 없이 기념일이 속한 달 중 본인 계좌에 지급해드리며, 선순위 유족의 형제자매 분들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적등본 등 관계입증서류(독립유공자, 선순위자, 신청인)와 통장사본을 지참하시어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동주민센터에 방문 혹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구

담당자 복지정책과 ○○○

연락처 02-○○○-○○○○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신청서

<2024.1.1.>

서울시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신청서 (위문금 대리수령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급계좌	현행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변경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인	성명(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관계		연락처	
	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 입금 계좌변경(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시 〇〇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2.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만 해당)의 가족관계 증빙자료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보관용〉		「독립유공자(유족) 기념일 위문금」 현금 수령증			
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용	급여명	독립유공자(유족) 기념일 위문금			
	수령일자	년 월 일	수령액	원	
<p>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 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수령자 : (서명 또는 인)</p>					

절 취 선

〈교부용〉		「독립유공자(유족) 기념일 위문금」 현금 수령증			
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내용	급여명	독립유공자(유족) 기념일 위문금			
	수령일자	년 월 일	수령액	원	
<p>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 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수령자 : (서명 또는 인)</p>					

「독립유공자(유족) 기념일 위문금」 현금 수령자 지급대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공자 본인/유족	수령액	수령일